**[양식 제66-2호]** 주식회사 본점이전 등기(타관할로의 본점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 등기신청** | | | | | | |  | |
| 접 수 | | 년 월 일 | | | | | 처 리 인 | | | 등기관 확인 |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상 호 | |  | | | | | | 등기번호 | |  | | |
| 종 전 본 점 | |  | | | | | | | | | | |
| 등 기 의 목 적 | | 본점이전등기 | | | | | | | | | | |
| 등 기 의 사 유 | |  | | | | | | | | | | |
| 등 기 할 사 항 | | | | | | | | | | | | |
| 새 본 점 | |  | | | | | | | | | | |
|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 |  | | | | | | | | | | |
|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상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 |  | | | | | | | | | | |
| 등록면허세 | 금 원 | | | | 지방교육세 | 금 원 | | | 농어촌특별세 | |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 | | 등기신청수수료 | | | 금 원 | | |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 | |  | | | | | | |
| 첨 부 서 면 | | | | | | | | | | | | |
| 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통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통  1. 정관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 | | | | |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용지규격 21㎝× 2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 | | | | | | |  | |
| 접 수 | | 년 월 일 | | | | | 처 리 인 | | | 등기관 확인 |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①상 호 | | ○○ 주식회사 | | | | | | ②등기번호 | | ○○○○○○ | | |
| ③종 전 본 점 | | 서울특별시 ○○구 ○○로 ○○ | | | | | | | | | | |
| ④등 기 의 목 적 | | 본점이전등기 | | | | | | | | | | |
| ⑤등 기 의 사 유 | | 20○○년○월○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 | | | | | | | | | |
| 등 기 할 사 항 | | | | | | | | | | | | |
| ⑥새 본 점 | | 경기도 △△시 △△구 ○○로 ○○ | | | | | | | | | | |
| ⑦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 | 20○○년○월○일 이전 | | | | | | | | | | |
| ⑧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 | 지배인 ○ ○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구 ○○로 ○○ | | | | | | | | | | |
| ⑨상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 | □□주식회사  20○○년○월○일 변경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⑩등록면허세 | 금 원 | | | | 지방교육세 | 금 원 | | | 농어촌특별세 | |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 | | 등기신청수수료 | | | 금 원 | | |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 | |  | | | | | | |
| ⑪첨 부 서 면 | | | | | | | | | | | | |
| 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통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통  1. 정관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 | | | | |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⑫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용지규격 21㎝× 29.7㎝)

|  |
| --- |
|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 외)등기신청** |

󰁨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 외)등기신청이란

주식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이 본점 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란 본점 소재장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장소를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등기부에는 지번‧동‧호수까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외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점을 등기소 관할 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는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에 모두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 이전일로부터(이전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할 수는 없음)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② 등기번호, ③ 종전본점**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 등기번호, 이전하기 전의 본점소재지를 각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본점이전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월○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새본점**

새본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⑦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본점으로 이전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신청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지배인 ○ ○ ○ (550101-1######) 서울특별시 △△구 ○○로 ○○” 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제목 및 등기의 목적란에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신청” 으로, 등기의 사유란에 “20○○년○월○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본점이전 및 본점에 둔 지배인 ○○○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⑨ 상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⑩ 등록면허세/수수료**

이전하는 신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또한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는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⑪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신청인 등**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상호변경의 경우 신상호)와 신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주주총회 의사록**

가. 주식회사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 기재 정도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확정적이 아닌 선택적 기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합니다.

나.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

가.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구체적인 소재 장소까지 기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둔 경우 각 이사가 (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함)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이전장소, 이전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정관**

등기 신청시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은 아니나 정관의 본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으로 가능하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가. 이전하는 신‧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각각의 등록면허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으로(아래 나.항의 대도시권역 내로의 이전인 경우 제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역 외에서 대도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한 대도시권역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 부과관서인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변경등록(상호 및 본점소재지 변경 등)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차량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상호를 변경할 경우 포함)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처음 상호를 정하는 경우와 같이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상호로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2.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이상은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외]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회사가 해산된 경우, 본점이전을 하면서 상호 이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